

# 공 적 심 의 의 결 서

2021년 8월 수시 공적심의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 
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·의결함

○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: 별첨

2021. 8.

## 서울특별시제1공적심의회

위 원	성 명	직 위	서 명
위원장	조 인 동	행 정 1 부 시 장	조인동
위 원	김 상 한	행 정 국 장	김상한
위 원	전 광 백	교 수	전광백
위 원	이 림	변 호 사	이림
위 원	정 성 재	변 호 사	정성재
위 원	김 대 규	변 호 사	김대규
간 사	민 수 흥	인 사 과 장	민수흥
서 기	이 재 화	성 과 관 리 팀 장	이재화

##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정부포상 심의

### □ 포상개요

- 포상내용 :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(행정안전부)
- 추천인원 : 2명
- 추천기준
  - 국가위임사무, 국고보조사업, 국가 주요시책 등 합동평가 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 자
  -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합동평가 관련 우수사례 또는 정책 발굴 및 추진 등 합동평가 업무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
### □ 서울특별시 추천 후보

- 총 2명

순위	소속 (부서)	성명	직급	추천부서
1순위	서울특별시 (평가담당관)	박 경 민	지방행정사무관	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
2순위	서울특별시 (평가담당관)	김 영 근	지방행정주사보	

※ 포상 훈격은 행정안전부 심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

□ **공무원 포상 추천제한** (2021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)

**1.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**

**2. 형사처분**

가. 공무원의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
**<주요비위란>**

「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

**<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>**

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 - 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 - 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 - 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 - 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 - 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 - 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4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### 3.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
가.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
나.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
### 4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제3항 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
※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

### 5.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### 6.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### 7.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